

## 이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조명호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년 10월 17일  
제출자 : 조명호, 김학인, 김정호  
민병효, 이종률, 이현호  
서동예, 원종성의원

### □ 입법취지(제안이유)

- 현행 이천시 향토유적보호조례가 1996년 3월 1일 공포 시행되고 2000년 7월 28일 1회 개정공포되어 16개 조문으로 구성 시행 운영되어 왔으나, 시행상 미비점이 많아 개인 소유 전통문화유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훼손과 망실이 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판단하고, 새롭게 본칙 34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전문(全文)을 개정하여
-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 관리보존함으로서 시사 편찬에 중거를 제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향토의식 함양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은 이천시 전통문화유산 보호조례로 개정함
- 이 조례에서 향토유물유적이란 향토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유물유적과 기타 민속과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의미함(안 제2조)
- 전통문화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집필편찬을 하며 향토 유적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등 향토사를 연구토록 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안 제5조)

-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함(안 제9조)
- 시사편찬소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12조)
- 시사편찬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통문화 유산보호위원회에서 결정 토록 함(안 제13조)
- 전통문화 보호 상 가치가 있는 향토유물유적을 시장이 지정토록 함(안 제14조)
- 지정 기준 시점은 1945년 이전 유물유적으로 하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으로 정함(안 제15조)
- 향토유적보호 관리상 필요시 시장이 보호 구역을 지정토록 함(안 제16조)
-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 고시토록 함(안 제17조)
- 유물유적을 연2회 이상 점검토록 정함(안 제21조)
- 보호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유물유적에 대하여는 시장은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2조)
- 향토사료실을 이천시에 두도록 함(안 제25조)
- 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직토록 함(안 제26조)
- 관람자가 진열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 시에는 변상토록 함(안 제27조)
- 사료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
-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

(제57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천시조례 제 호

##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이천시향토유적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이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사편찬과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유적보호 및 고고 자료, 문현자료, 민속자료와 기타 유물의 수집, 보관을 위한 향토사와 문화유적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의식 함양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물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문화재보호법,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및 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물과 유적
3. 민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2장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제3조(위원회설치)**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조사와 문화재보호 및 향토자료 실의 효율적 운영과 유물 감정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연구, 조사,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집필 및 편찬
3. 향토유적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환경보전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사항

5. 향토사료실 자료의 수집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7.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8.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및 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9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7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문화관광 담당이 된다.

### 제3장 시사편찬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 편찬소위원회(이하 “편찬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과 운영)** 편찬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향토유적보호

**제14조(향토유적지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로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 유적 중 이천시 전통문화 보존상 가치가 있는 향토 유물 유적을 시장이 지정한다.

**제15조(지정기준)** 향토유물유적은 1945년 이전 유물유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물유적으로 한다.

1.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보호 관리함으로서 전통문화연구에 필요한 고고 자료, 문헌자료, 민속 자료 및 기타유적

**제16조(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호 구역 안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17조(고시)** ①시장은 향토유적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서 교부)** ①지정된 향토 유물유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향토 유물유적 지정서 발급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자 지정)** ①향토유적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와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시장이 지정한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20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 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향토 유적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시장은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유적 보전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5. 시장은 진입로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보조)** ①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7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②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제23조(기록작성 보관)** ①시장은 향토 유물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문화재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계도)** ①시장은 향토유물유적 지정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향토 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 제5장 향토사료실 운영

**제25조(위치)** 향토사료실을 이천시에 둔다.

**제26조(실장)** ①향토사료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직 한다.

②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료실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7조(손해배상)** ①관람자가 진열된 유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 및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물을 파손,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유물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소장품구입)** ①향토사료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자문을 구한 후 구입할 수 있다.

②구입 된 유물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 소장품 대장에 등재(사진첨부)하여 사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전시대상물)**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와 관련이 있는 사료 또는 시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한 개인 소장품
2. 전시를 목적으로 기증, 구입한 유물

**제30조(전시유물관리)** 전시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전시관 개관 전에 전시관 및 전시유물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2. 전시유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3. 위탁된 전시유물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전시물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위탁 전시한 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전시물 반환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제31조(전시유물 안전대책)** ① 전시 유물 중 귀중한 유물은 도난, 파손, 화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관람거부 또는 퇴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실장은 관람자의 관람을 거부 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관람 질서가 문란하여 타인의 방해가 되는 경우
2. 실장의 허가 없이 유물에 손을 대거나 촬영 복사할 때
3. 실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고성방가를 할 때
4. 그 밖의 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

**제33조(관람시간)** 향토사료실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 10:00 - 17:00
2. 토요일 : 10:00 - 12:00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의 연장 및 공휴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지정 관리되고 있는 유물유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유물유적으로 본다.

[별지제1호서식]

제      호

지      정      서

위      치      :

명      칭      :

수      량      :

위와 같이 향토 유물·유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인)

(제57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향토 유물·유적 지정서 발급 대장

발급 번호	명칭	종별	지정 번호	지정 일자	수량	소재지 또는 보 장 관 소	소 유 자			발급 일자	발급 자(인)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별지 제3호서식]

향토 유적 간판

000(향토유적명기재)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금지행위: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제57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

[별지 제4호서식]

### 유물 소장품 대장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추정 시대	소 장 년월일	소장 경위	출처	크기	구조 및 특징	참고 사항

[별지 제5호서식]

위탁 전시물 등록 대장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추정 시대	위탁 년월 일	위탁 경위	크기	구조 및 특징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위탁 전시물 반환 대장

반 환 년 월 일	등록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위탁 일자	구조 및 특정	소 유 자			반 환 담당자 (인)	소유자 및 인수자 (인)
							주소	성명	주민 등록 번호		